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2

제출년월일 : 2005. 12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(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)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14조 (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) 삭제.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 대비표 : 붙임

5. 관 련 법 령 : 붙임

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대비표
【영주시환경기본조례】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14조(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)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의회 의원, 환경전문가, 환경관련기관·단체 임직원, 시의 관계 공무원,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영주시 환경보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. 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.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	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환경기본조례 개정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⑥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⑨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	

관계법령 발췌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6조(환경보전위원회) 삭제(2002.12.30)

[개정전]
제36조(환경보전위원회)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.
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환경보전자문위원회)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(본항개정 2002.12.30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시·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(본항개정 2002.12.30)

[개정전]
제37조(환경보전자문위원회) ①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